2021학년도 수사과학대학원 일반전형 필답 및 면접구술고사장(대기실) 편성표

1. 필답고사 및 면접고사 안내

고사장번호	학과명	필답고사 (전공) (09:30~10:50) (80분)				면접고사 (11:10 ~)			비고
		수험번호	지원인원	건물번호	고사장	건물번호	고사장	대기실	
1	법정의학과	62A191001 ~ 62A191011	11	의대본관	의과대학 본관 125호	의대본관	의과대학 본관 203호	의과대학 본관 209호	
2	과학수사학과	62A192001 ~ 62A192021	21	의대신관	의과대학 신관 138호				
		62A192022 ~ 62A192055	34			의대본관	의과대학 본관 212호		
3	법의간호학과	62A193001 ~ 61A193040	40	의대신관	의과대학 신관 101호	의대신관	의과대학 신관 202호	의과대학 신관 101호	
4		62A193041 ~ 61A193077	37	의대신관	의과대학 신관 201호	의대신관	의과대학 신관 203C호	의과대학 신관 201호	
		62C193001 ~62C193003	3						
5	법정의학,과학수사,법의간호	예비고사장		의대본관	의과대학 본관 319호	의대본관	의과대학 본관 105호	의과대학 본관 319호	유증상자

*** 고사장 호실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당일 고사장에서 안내할 예정**

2. 수험생 유의사항

가. 수험생은 고사당일 09:00까지 수사과학대학원 필기고사 고사장실에 도착하여 고사에 필요한 안내를 받아야 함.
나. 고사 당일 수험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필기도구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다. 수험생이 전형요소 중 어느 한 요소라도 불참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라. 답안은 흑.청색 볼펜 또는 만년필로 기재하되 한가지 색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불필요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목의 답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연필, 수정액, 형광펜 사용불가)
마. 수험상 필요한 물품 이외의 물품은 고사장 휴대를 일체 금하며 수험생 상호간에 시험관련 대화를 주고받지 못하며 수험 부정행위자는 수험자격을 박탈함.
바. 부정한 방법(지원자격 위반 등)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사. 별도의 안내가 없는 한 고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시하므로 늦지 않도록 대비 바람.
아. 입시기간 중 주소, 전화번호, 긴급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수사과학대학원 행정실로 변경사항을 알려야 함.
자. 수험생이 개인적 사정 등에 의해 면접구술고사에 단순 결시한 경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차. 입학전형 평가 내용 및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카. 합격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합격자 발표 시에 공고)에서 소정의 등록 서류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간 내에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함.
타. 주차공간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람.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사과학대학원 행정실(420-4910)로 문의하시기 바람.

3.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안내

가. 응시자 중 COVID-19 확진 환자, 환자의 접촉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현재 입원치료통지서(또는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고사장 출입을 금함.
나. 시험 당일 시험장 출입구에서 체온 측정 및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후 37.5℃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유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다. 수험생은 고사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고, 아래의 안전수칙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고사장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개인 이동 동선 최소화
- 수험생은 자가문진표 제출
- 대기실 입구에서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 후 입실
-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유무 확인 후 대기 장소로 이동
- 발열 체크 대기 시 수험생 간 일정 거리(1.5m 이상) 유지
- 수험생 간 불필요한 대화 금지 및 일정 거리 유지
- 시험 종료 후 손소독제 사용 및 즉시 귀가

라. 격리 대상자가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고사에 응시하였을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